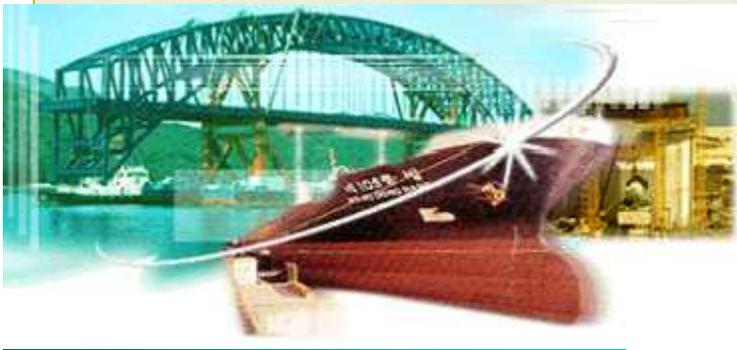


CISG 제2편 제11조~제19조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비엔나협약, CISG)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4조-제24조)



■ 청약의 요건(제14조)

- (1)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청약이 된다.

첫째, 특정성 :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함. 불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청약의 유인일 뿐이다.

둘째, 확정성 :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목적물 표시, 수량과 가격을 정하거나 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제1항 제2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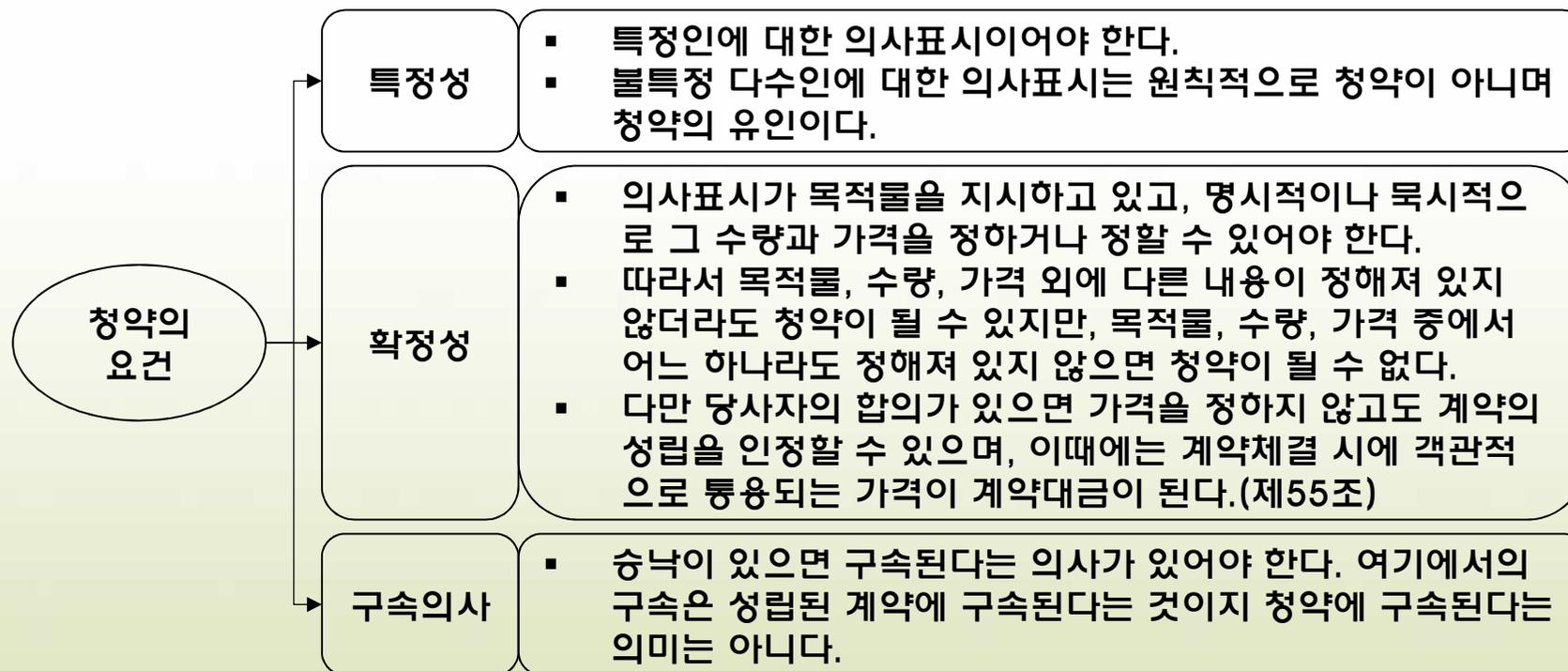
- 목적물, 수량, 가격 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청약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목적물, 수량, 가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의사표시는 청약이 될 수 없다.

셋째, 구속의사 :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구속은 성립된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이지 청약에 구속된다는 의미가 아님. 가격표나 카탈로그 또는 선전물을 보내는 것은 보통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될 뿐이다.

제2편 계약의 성립

청약의 요건(제14조)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첫 번째 요소인 청약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 청약의 효력(제15조)

-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회수(withdraw) :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거두는 것

철회(revocation) : 의사표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의사표시를 거두어 가는 것

■ 청약의 철회(제16조)

(1)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가]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나]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청약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다는 원칙(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착한 경우)을 정하면서 두 가지 예외를 제시하여 이 원칙을 제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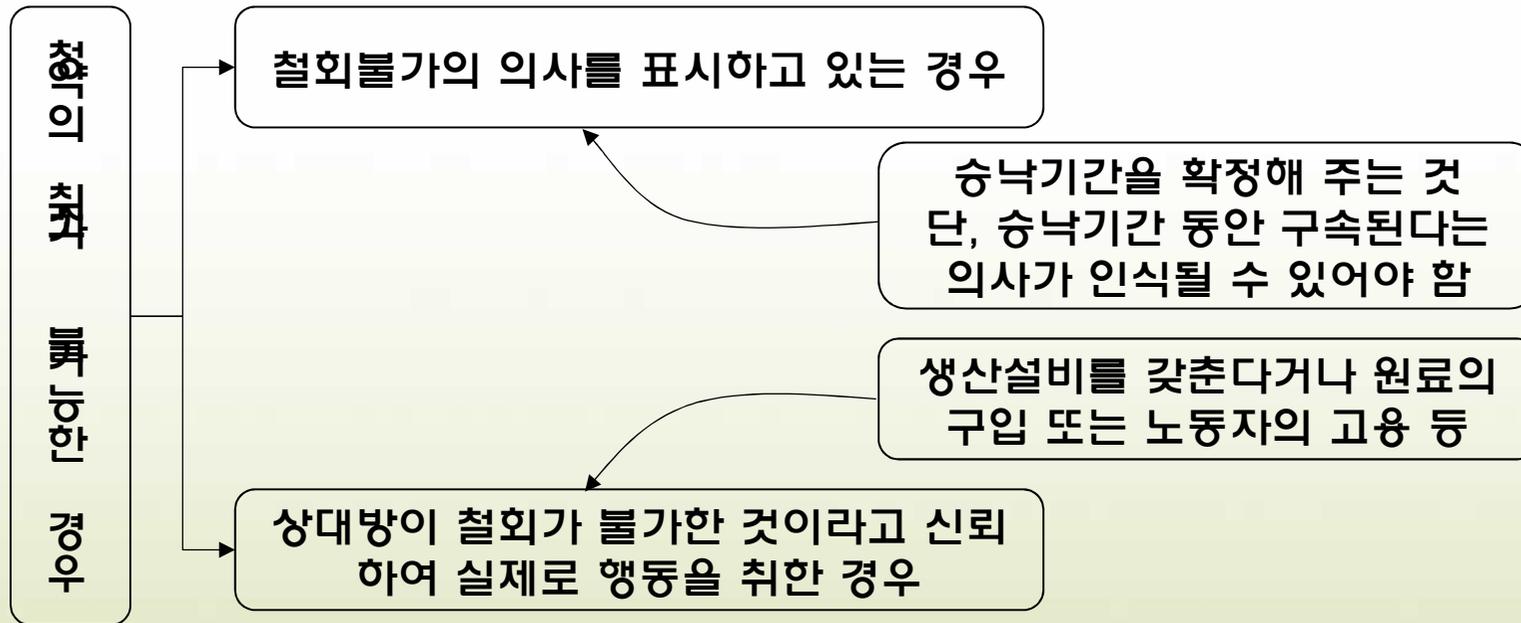
❖ 이 규정은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하는 법계(영미법계)와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계(독일법계)의 타협물로 볼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는 경우

① 청약이 승낙을 위하여 확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취소불능임을 명시

②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믿고 행동한 경우(예컨대 청약 수령자가 생산설비 구비, 원료의 구입, 사람 고용 등을 행동)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제16조 제2항)



■ 취소불능 청약의 효력상실(제17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 철회할 수 없는 청약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이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확정적인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에 상대방의 거절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그 승낙기간 동안 청약자가 청약에 구속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의문을 해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 청약에 대한 동의 표시의 방법 및 시기(제18조)

- [1]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도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청약에 대한 동의 표시의 방법 및 시기(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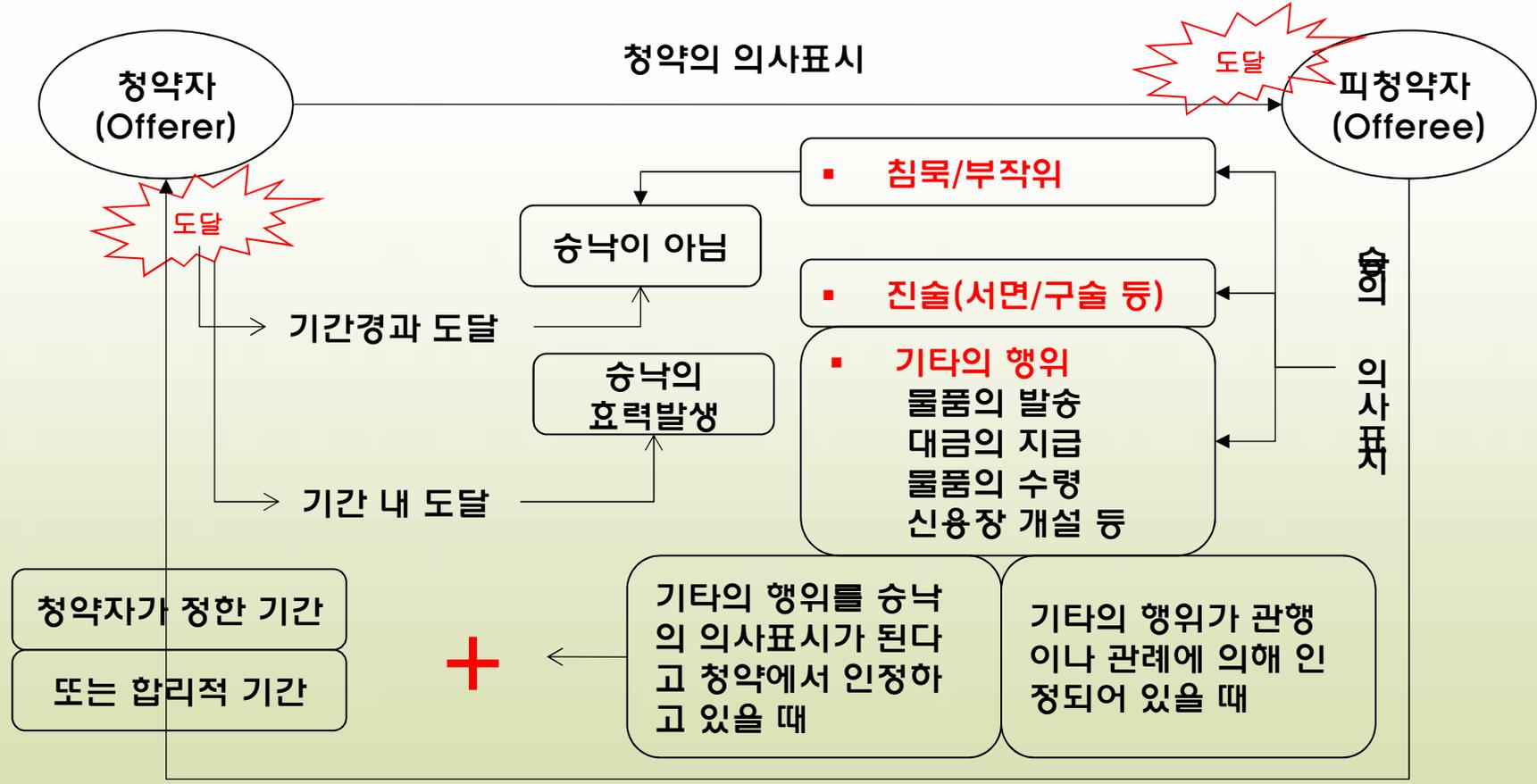
- ❖ 승낙의 정의 :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
- ❖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으로 되지 아니함
예컨대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인정하겠다는 청약에 대해 침묵하거나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다고 해도 승낙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행 또는 관례에 의해 침묵도 승낙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 ❖ 승낙의 효력
 - ① 승낙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 채택(CISG)
 - Ⓐ 대화자간 ⇒ 도달주의 (모든 법체계)
 - Ⓑ 격지자간 ⇒ 발신주의 : 영미법, 우리나라의 민법, 일본법
도달주의 : 비엔나협약, 독일민법
- ❖ 승낙의 방법
 - Ⓐ 진술에 의한 승낙
 - Ⓑ 기타행위에 의한 승낙 (물품의 발송, 대금지급, 물품의 수령, 신용장 개설 등)
 - Ⓒ 무행위에 의한 승낙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이 아님 ⇨ but, 합의한 경우 승낙
(즉, 명시적으로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습 또는 관행)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8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

승낙의 의사표시(제18조)

이 규정은 승낙의 개념에 대한 정의, 여러 상황에 따른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 변경된 승낙(제19조)

- (1)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 (2)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相違)를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조건이 계약조건이 된다.
- (3)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등의 상이한 조건은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 변경된 승낙(제19조)

❖ 청약과의 내용적 일치

① 승낙의 원칙

-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불일치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반대청약

② 본질적인 변경이 아닌 승낙의 효력

-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며, 청약의 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승낙을 구성함.
-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를 구두로 반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청약자가 그러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사항을 추가한 조건이 계약의 조건이 됨

③ 본질적인 변경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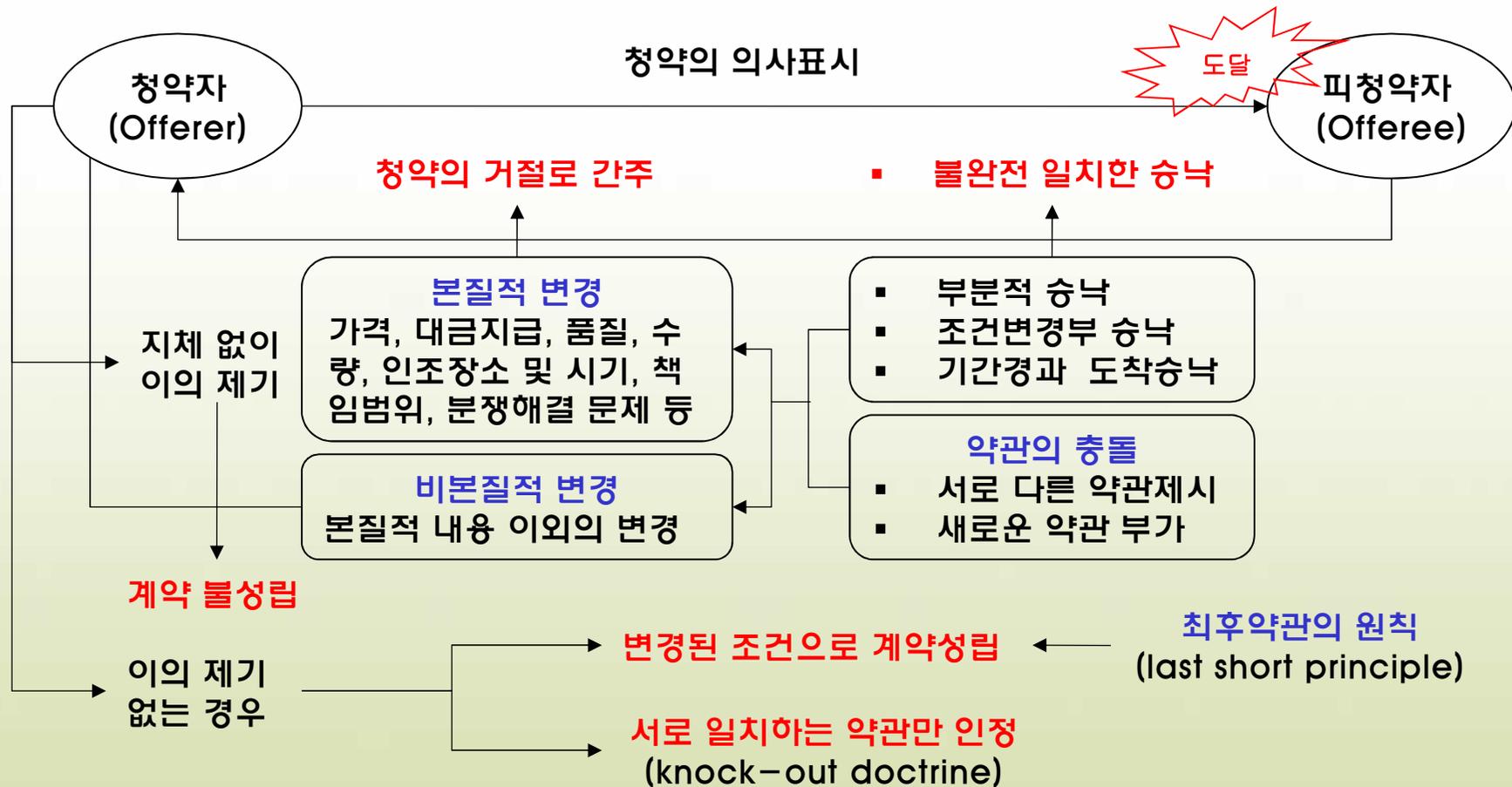
- 본질적 변경이 있는 승낙이란 승낙서에 가격, 결제, 품질과 수량, 인도 장소와 시기, 상대방에 대한 일방의 책임범위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추가, 혹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9조 변경된 승낙의 효력

불일치한 승낙(제19조)

이 규정은 불완전 일치한 승낙에 대한 문제를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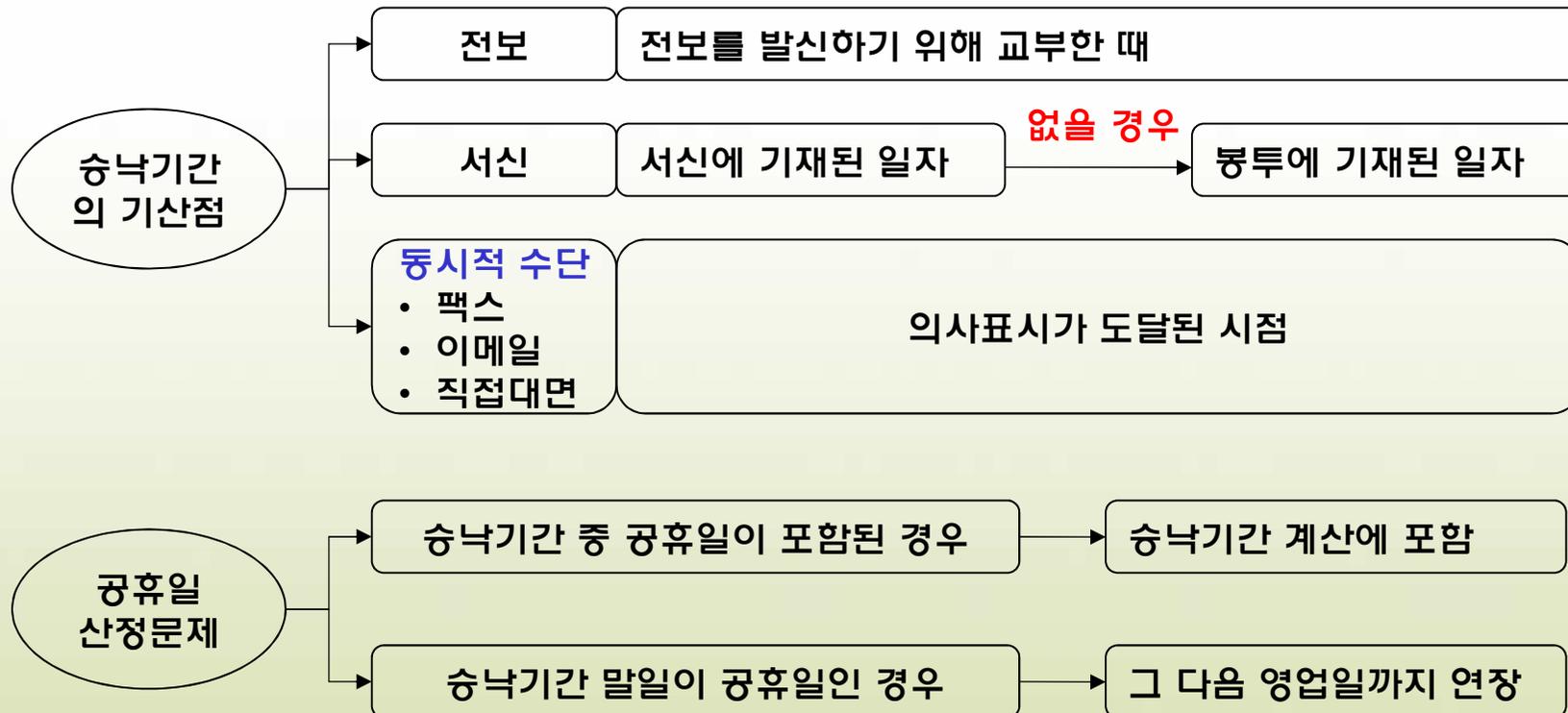


■ 승낙기간[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영업일까지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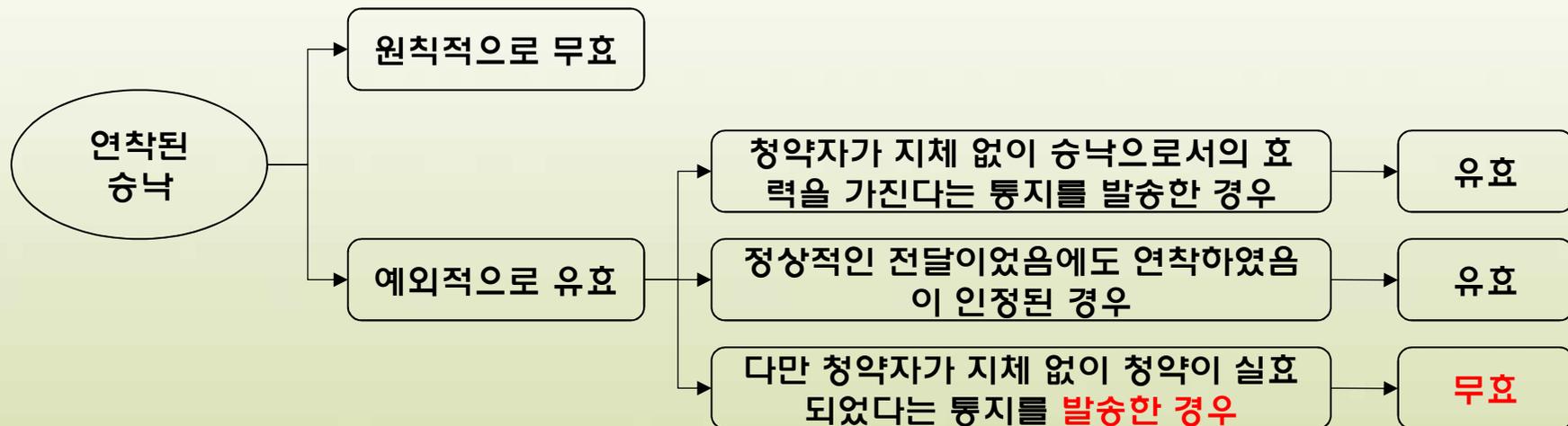
승낙의 기간(제20조)

이 규정은 승낙기간의 기산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의 기산점 결정에 관한 보충규정과 공휴일 산정문제를 정하고 있다.



■ 연착된 승낙의 예외(제21조)

1.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승낙의 회수(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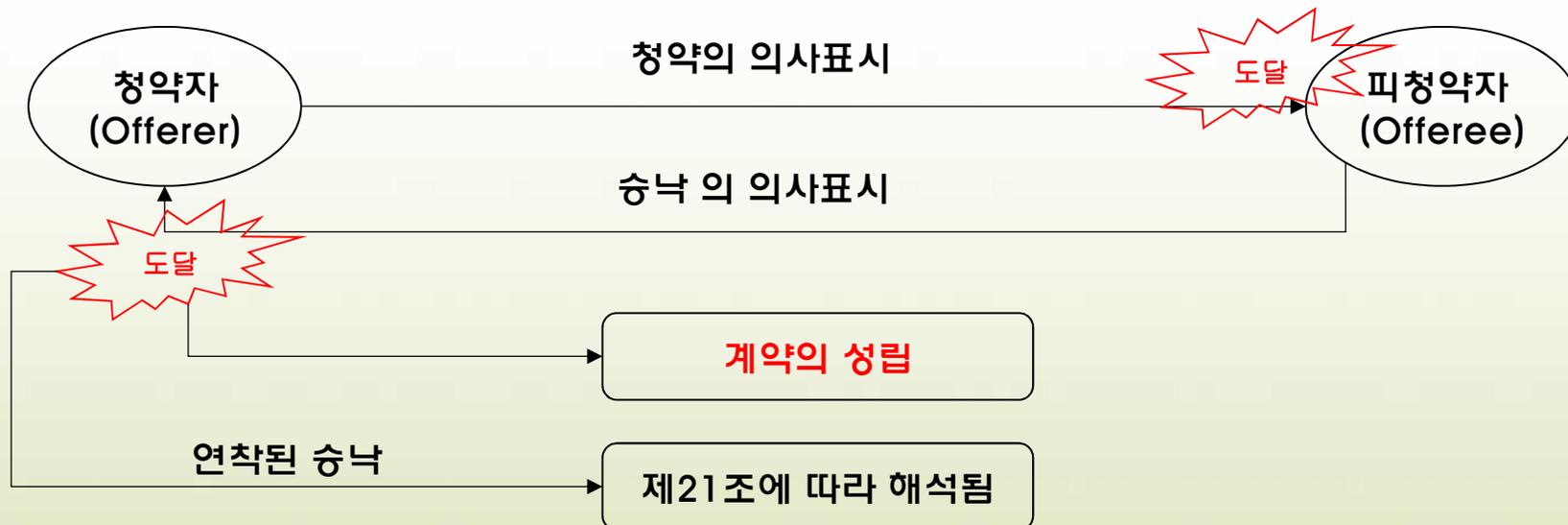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 계약의 성립시점(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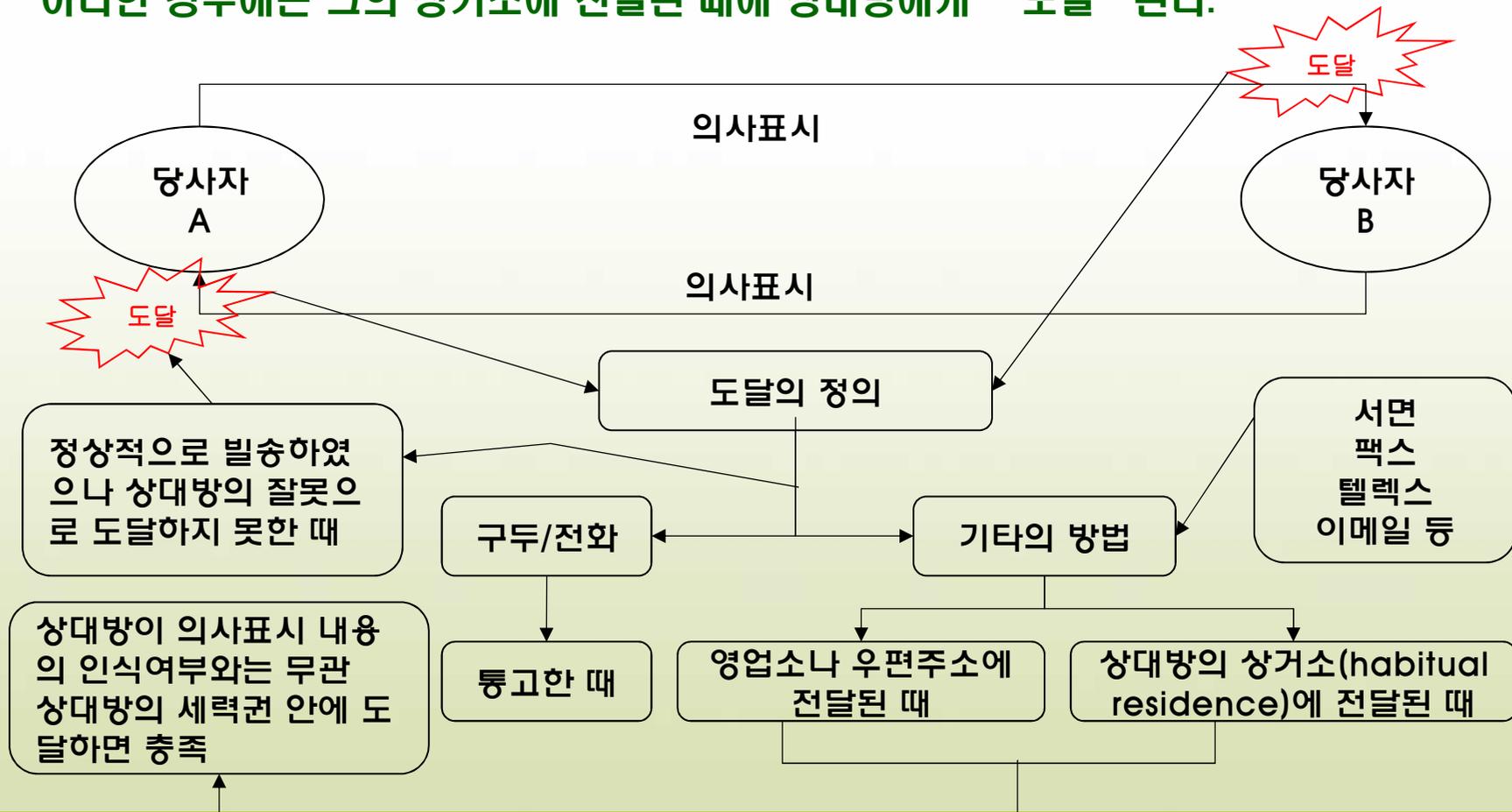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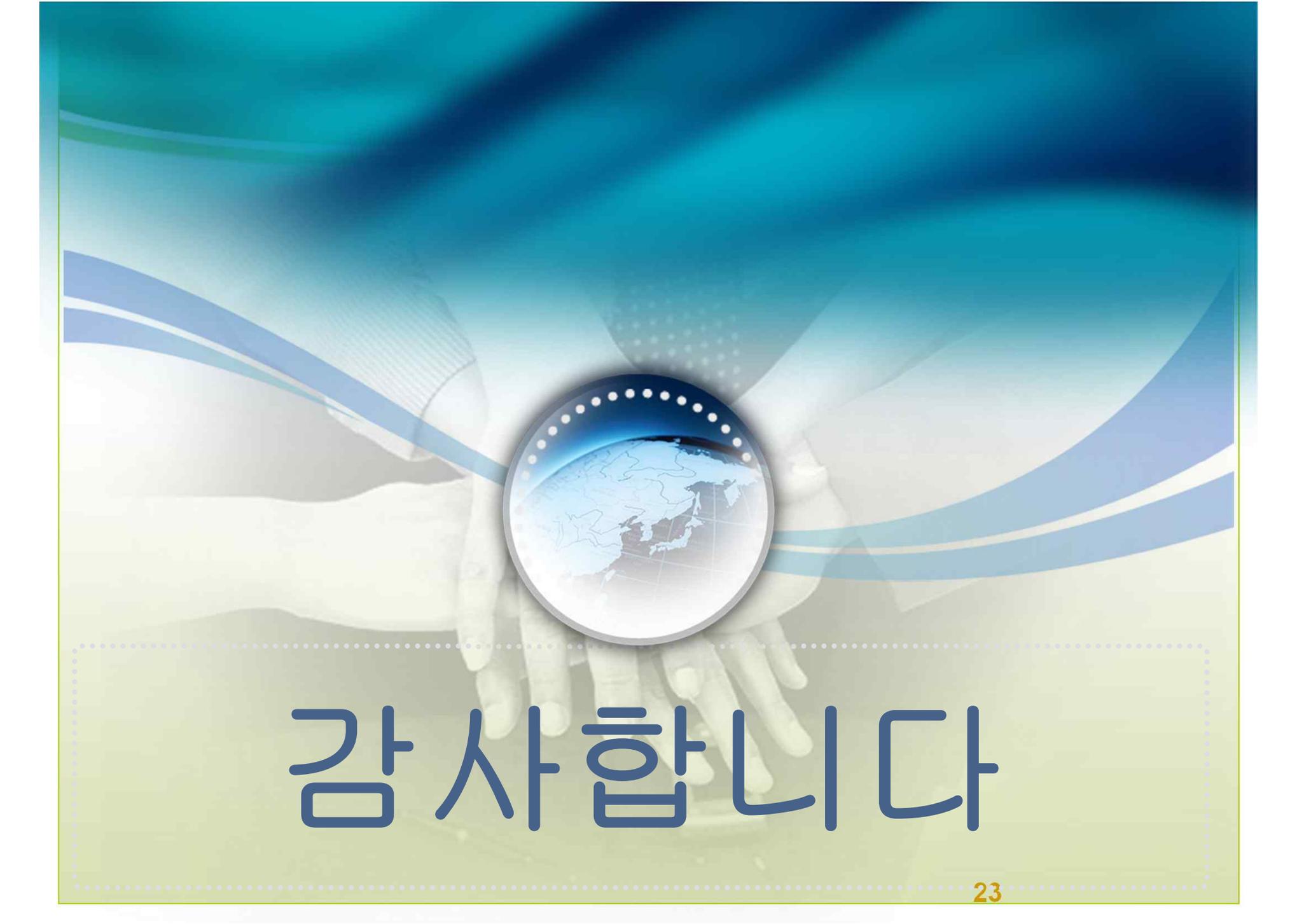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이 도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 도달의 정의(제24조)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로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 된다.





감사합니다